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2.

법제사법위원회

목 차

I . 감사 목적	1
II . 감사 기간	1
III . 감사대상기관	2
IV . 감사반 편성	4
V . 감사 경과	7
VI . 주요감사내용	8
1. 법 무 부	8
2. 법 제 처	58
3. 감 사 원	62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3
5. 헌법재판소	82
6. 법 원	88
7. 군사법원	122
VII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9
1. 법 무 부	129
2. 법 제 처	138
3. 감 사 원	140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3
5. 헌법재판소	145
6. 법 원	147
7. 군사법원	154

I

감사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

II

감사 기간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25일(금)

Ⅲ

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국가기관)	○법무부	■ 법무부 소관 (26)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의정부지방법검찰청	
	○인천지방법검찰청	
	○춘천지방법검찰청	
	○대전지방법검찰청	
	○청주지방법검찰청	
	○대구지방법검찰청	
	○부산지방법검찰청	
	○창원지방법검찰청	
	○울산지방법검찰청	
	○광주지방법검찰청	
	○전주지방법검찰청	
	○제주지방법검찰청	
	○수원지방법검찰청	
	○법제처	■ 법제처 소관 (1)
	○감사원	■ 감사원 소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1)
	○헌법재판소(사무처)	■ 헌법재판소 소관 (2)
	○헌법재판연구원	
	○대법원(법원행정처)	■ 법원 소관 (44)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 서울고등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특허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 부산지방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인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 군사법원 소관 (1)
제3호 (공공기관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정부법무공단	■ 법무부 소관 (3)
계	79개 기관	

IV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18인)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비 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 청 래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승 원	간 사
		김 용 민	
		박 균 택	
		박 지 원	
		서 영 교	
		이 건 태	
		이 성 윤	
		장 경 태	
		전 현 희	
위 원	국민의힘	유 상 범	간 사
		곽 규 택	
		박 준 태	
		송 석 준	
		장 동 혁	
		조 배 숙	
		주 진 우	
위 원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박 은 정	

나. 지방감사반 구성

구 분	감사반장	감사위원
지방1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지원, 이성윤, 전현희 (국민의힘) 박준태,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지방2반	유상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서영교, 이건태, 장경태 (국민의힘) 곽규택, 송석준 (조국혁신당) 박은정

다. 사무보조자

○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

직 위		성 명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전문위원		김 성 완
전문위원		박 동 찬
전문위원		이 화 실
입법조사관(3급)		김 세 현
입법조사관(3급)		박 지 영
입법조사관(4급)		유 향 재
입법조사관(4급)		모 주 영
행정실장		정 진 욱
입법조사관(4급)		이 정 미
입법조사관(4급)		정 수 정
입법조사관(4급)		최 준 호
입법조사관(4급)		이 혜 미
입법조사관(4급)		문 정 호
입법조사관(4급)		소 만 경
입법조사관(5급)		박 효 민
입법조사관(5급)		김 태 현
입법조사관(5급)		박 은 정
입법조사관(5급)		최 한 슬
입법조사관(5급)		박 진 영
입법조사관(5급)		이 상 민
입법조사관(5급)		김 홍 규
입법조사관(6급)		이 강 욱
주무관(6급)		김 민 욱
주무관(6급)		박 욱 서
주무관(6급)		김 수 자
주무관(6급)		이 미 숙
주무관(6급)		임 현 숙
주무관(6급)		이 지 영
행정관(6급)		임 채 현
행정관(7급)		김 기 연
파견관	자문위원(부장판사)	김 신 유
	자문위원(부장검사)	신 재 홍
	자문관(헌법연구관)	남 상 규
	입법조사관(4급)	서 홍 석
계 35 인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보좌진 (18인)

○ 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성명
더불어민주당	손민호
국민의힘	홍수정
계 2인	

○ 의정기록 주무관 (5인)

직위	성명
주무관(6급)	정현석
주무관(6급)	양세희
주무관(6급)	이보람
주무관(7급)	김유정
주무관(8급)	안소은
계 5인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7.(월)	10:00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국 회	
10. 8.(화)	10:00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 회	
10. 11.(금)	10:00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 회	
	14:00	군 사 법 원	국방부	
10. 14.(월)	10:00	법 제 처	국 회	
	1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 15.(화)	10:00	감 사 원	국 회	
10. 17.(목)	10:00	(지방1반)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등법원	
		(지방2반)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 부산회생, 울산지법, 울산가정, 창원지법	대구고등법원	
	14:00	(지방1반)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대전고등검찰청	
		(지방2반)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대구고등검찰청	
10. 18.(금)	10:00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국 회	
10. 21.(월)	10:00	대 검 찰 청	국 회	
10. 22.(화)	10:00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 서울행정, 서울회생,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 수원회생	국 회	
10. 24.(목)	10:00	<현 장 시 찰> 안양교도소	경기 안양	
	15:00	감 사 원	감사원	
10. 25.(금)	10:00	<종 합 감 사>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 회	

1. 법무부

가. 법무부 본부

1) 법무행정 부문

- 북한 헌법 개정 논의 중 이른바 ‘2개 국가론’과 관련하여 영토 규정 충돌 및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해 보임.
-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신설되었는데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안을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인사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봄.
- 정부조직법 및 직제 등에 법무부의 업무로서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것은 실제 인사검증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사찰’을 위한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이후 인사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과 법무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일부 복구된 후 마약 단속 실적이 증가했으나, 국제적 마약범죄 확산을 고려할 때 미국 마약 수사국과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청’ 설립이 필요함.
-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함정수사 외에 제한적으로라도 ‘위장수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법무공단에서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건과 관련한 소송 수행을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항소심에서 징계절차 일부 위법으로 취소판결이 있자 상고를 포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 라임 사건 관련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 중 1인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는바, 이들 검사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함.
- 현행법상으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몰수도 불가능하게 되는데, 해외 입법례 및 UN 반부패 협약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동의하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사법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무 관행을 점검해 보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콜센터’는 서민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등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전담 조직·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바,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봉급 상승도 되지 않고 있어 지방에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과 관련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을 높이기 위해 홍보 강화와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바,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

지 않도록 법무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불법 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을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적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바,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통계를 참고하여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소관 예규에 ‘정신병자’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등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바, 법치질서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검사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
- 탄핵 소추된 검사의 변호사비를 검사동우회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과 약식기소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분 위장수사 적용범위 확대 논의와 효율적이고 통합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사건이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음에도 기소율은 전체 사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과 기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필요가 있음.
- ‘통역을 받을 권리’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기본권이므로, 사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사법통역제도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간첩사건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되었던 상금·보로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법무부는 이를 환수한 내역이 한 건도 없고 재심 사건을 관리하지도 않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과거사 재심사건의 경우 재심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항소의 남발을 제한하는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음.
-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하여 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위법성 지적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후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눈속임에 해당하며, 전자정보 선별 작업이 끝났음에도 혐의사실 무관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 위반임.
-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없는지 고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원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만들어 계속 추진해왔으므로, 제22대 국회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 및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하였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공백 상태임. 최근 25세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려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경우, 압수수색의 대부분이 사법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에도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의 처벌이 경미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바, 사형제 존치 및 사형 집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고 중대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여론 수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최근 화성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살인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족구조금을 받았으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이혼한 아버지도 유족구조금의 절반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성남 야탑역·신림역 흉기 난동 사고, 온라인 살인 예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기존 법으로 처벌 및 범죄 예방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어 공중협박죄 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법제화가 필요하므로, 법안이 적극적으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서현역 흥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실질적 지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 연계 역할에 그치고 있으므로, 저리 금융 지원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를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하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 등 구조금과 복지급여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보조금을 주었다고 EU에 제소하였는데, EU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단지 입찰에 참여한 두 개의 중국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보조금 반대 조사를 벌인 바 있는 만큼, 우리 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동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이 장기화되면 배상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과 이자 부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론스타·엘리엇·메이슨 세 사건과 관련한 비용을 합치면 5,750억 원에 이른다. 국제배상 판정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국방부는 국내업체에서 납품한 CCTV가 중국의 악성코드에 노출되도록 설계된 것을 파악하여 해당 CCTV 1300여대를 철거하였는데, 법무부·교정시설·출입국시설 등 내에 설치된 중국산 CCTV 현황을 전면조사하여 그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도박 범죄는 관련 법률이 산재되어 있고 법정형이 낮아 통일적인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행의 국제화·지능화로 수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박광고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지난 '23. 1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개선검토를 발표한 내용 중 실제 개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24. 10.까지 전무한 상황이므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및 이를 방치하는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가 엘리엇 ISDS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였는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에 ISDS의 기존 판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체 추정금 2,205억 원 중 미납된 금액은 총 1,325억 원임. 사망한 범죄자의 은닉·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환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찰개혁 부문

-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이 있음.
- 특수활동비는 마약 수사 등 꼭 필요한 영역이 있고 수십 년간 민생·치안을 위해서 유지되어 온 것이므로, 한 번에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수활동비를 감액만 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이러한 예산을 증액하여 마약 수사 및 위장 수사 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금융증권·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시스템이 훼손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시행령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생범죄 수사 및 공판에 필요한 검사가 부족하다며 증원을 이야기 하면서 야당 대표에 관한 특정 사건에 다수의 공판검사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수사·기소가 분리된다면 검사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검사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징계법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시스템과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유에서 부적절함.
- ‘법왜곡죄’는 조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검사의 수사 및 기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는 검찰의 중립 의무를 지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법무부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음.
-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공수처는 그 근거가 없다면서 이를 검찰이 보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오랜 시간 쌓은 검찰만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바, 국가 공권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수사 관할에 관하여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함.

-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추진된 것은 없는데, 수사지휘권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수단인바,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검찰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연락도 받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검찰수사사항

-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충전금 불법 유용 및 낙전 수익 등 여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함.
-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의 위반 문제를 간과한 것이고,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임.
-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명품백의 구매 처리 여부 및 함께 수수 의혹이 제기된 고급 향수·양주의 증거물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국고로 환수한다는 해당 명품백이 실제 영부인이 받은 것과 같은 물건인지 공개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보고 없이 보안청사에서 영부인을 조사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 영부인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영부인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음.
- 영부인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발언을 근거로 여러 주장들을 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음.
- 공천개입 등 영부인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음.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등, 공정한 법무·검찰이 되기 위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필요함.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방조범으로 2심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가담자와 달리 영부인은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다수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적절하다고 봄.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박 자료로 발표한 것은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하므로 검찰 등을 통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것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공정하지 못함.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특검법에 대하여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검법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 영부인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전 정권하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었음에도 입증된 것이 없었는바,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하다고 봄.

- 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 관련 국회규칙 개정안의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에 해당한다고 봄.
- 관광호텔 개발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및 청문회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부패사범에 대한 수사 진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 및 유도신문 의혹이 있고 공소장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문제가 있음.
- 리호남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간첩)으로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낮고, 국정원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1심 법정에서 채택된 점을 감안할 때 리호남 및 국정원 보고서를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을 고르듯이 하여 수원지법에 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부적절함.
-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수감 중인 경기도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언급한 녹취록은 신뢰성이 높아 보이고, 그에 따른 고발 조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과정의 회유·협박 주장에 대해, 당시 변호인들과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판단 및 녹취록을 근거할 때, 회유·협박은 없었다고 판단됨.
- 이화영 증인의 ‘연어·술 파티’를 통한 검찰의 회유 시도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교도관 34명과 변호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이 특정한 날짜·장소, 참석자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조사실에서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김성태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할 때 증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경기도 전 부지사의 변호인임에도 야당 대표를 위해서 진술을 번복 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한 부분은 변호사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음.
- 김혜경 여사 관련 130곳 압수수색이 과잉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부 공익제보자의 사용처 특정에 따른 확인 필요성,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결제자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
-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텔레그램 대화 및 녹취록을 근거로 초밥, 소고기, 과일 등 개인적 소비품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움.
-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후보시절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대통령실 전 행정관이 특정 인터넷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영부인 및 여당 대표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이 녹취록 공개를 통해 드러났는바,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함.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재산·조세포탈·비자금은닉 등 의혹에 대하여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입법 논의도 필요함.
- 대통령 공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러 법령 위반 등이 드러났고 영부인 관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대표 등 3,170명에 대한 가입자 정보 조회를 통해 통신정보 등을 수집하였는바, 이는 불법 사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진상 파악이 필요함.
- 검찰이 먼저 ‘타깃’을 설정한 후 이른바 ‘정치 사냥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심 선고 이후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바, 수사가 증거와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음.
- 사범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100여명에 가까운 법관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상당수에 대하여 그 결과 통지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고,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후 장기간에 걸친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는바 이를 기소한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해외 순방 시 영부인이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등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으므로 대여비 지불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지불이 없었다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직전 대통령의 영부인이 해외 순방 시 착용한 의상·장신구 등에 대해서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살상케 하여 북한과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는 형법상 외환유치의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공사 입찰 건 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였고, 업체별 투찰금액 정보 무단유출 등 입찰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음. 이후 국무조정실은 수자원공사 임직원 8명을 입찰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이첩하였는데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이미 입찰비리 의혹이 확인되어 검찰에 이첩한 만큼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4) 교정행정 부문

-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고 이후에도 3개월을 추가로 서울구치소에 머물러 있었던 특정인에 대한 대통령실 등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 최근 극악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바,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을 시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교정서비스의 성격에 비하여 교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특수행정서비스에 맞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새로 지을 전주교도소가 주민 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 구치소·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오인하여 재소자를 잘못 석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교도관과 어깨가 부딪힌 재소자가 쇠사슬에 묶여 독방에 감금된 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및 간 손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법무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수형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은 2024년 기준 전국 54개 운영 중으로, 예산 총액이 1억 3,500만원에 불과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사회복귀를 위한 재교육의 공간으로 교정시설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람.

- 교정시설 내 영유아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용품을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충족을 위한 이전시설 규모 축소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변호인의 화상 접견 건수가 매년 1만 건에서 1만 4천 건 가량인 상황이므로, 변호인이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개인PC를 이용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기준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4.5%로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바, 교정시설 및 소년범 수용시설에 대한 가석방 활성화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보호행정 부문

-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범 죄는 강력한 범행 동기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고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봄.
-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국민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법무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무도실무관의 경우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구가 불충분하고 법적 분쟁을 우려하여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특수직무수당·계호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출소자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숙식 제공이나 재사회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단이 메꾸지 못한 부분에서 한국교화복지재단 등 민간보호복지단체들이 출소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민간보호복지단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사회로 나온 마약사범들이 치료·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므로, 마약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장단기 치료기관 확보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출입국·외국인행정 부문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신축 시공사 선정 시 업계 내 유력 업체가 배제되고 이전에 대통령 관저 공사 등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던 업체가 선정되었는바, 관련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해외의 난민정책 실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전달하는 체계이자 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행정 조직 설치 전에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E-9 비자를 이용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함에 따라 가사사용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맞지 않게 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자 문제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들이 지역 사회에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한 정책을 폭넓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의 역할이 크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는바, 그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현장에 맞는 탄력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고용문제 등 국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모 난민심사관이 통역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음에도 해당 난민심사관은 계속하여 정상 근무 중인 상황인바,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함.
- 매년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난민 관련 문제도 늘고 있는바, 난민정책 수립과 난민범죄 대응을 위하여 통계자료 및 사례집 관리가 필요함.
- 사건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조치가 연간 9,000건 이루어지고 있고, 현 정부 들어 47% 가까이 증가한바, 수사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사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사건 중 10건은 난민소송으로, 난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지급되는 생계비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난민 생계비 부정수급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와 ICRM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환전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자발급 지연으로 농사와 어업, 기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지연 또한 대학의 학사일정 운영에 영향이 있음. 특히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신속히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난민심사나 소송 등의 사유로 장기보호대상 외국인 발생이 불가피한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권익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등 대안적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함.
- 외국음식 전문음식점의 E-7 비자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중 중식당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 음식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전문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을 통해 지방의 산업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사업에 지방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대검찰청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등검찰청장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으로, 검찰총장은 이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음.
-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검찰총장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여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책임은 지난 정부에 있으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지난 21대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 및 재수사 증가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시 압수수색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음. 이렇게 거짓말한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검찰 검사동우회 기금 적자전환 우려가 있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검사에 대해 1,000만원씩 지급하는 동우회 규약 개정 관련 의견 청취 공문을 각 지청에 보냈음.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의 변호사비 지원의 근거규정이 되는 것이므로, 상기 동우회 규약 전체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위한 움직임 등 검찰 조직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검찰총장께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보완수사 관련 검찰과 공수처 간 입장 차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한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수사할 수 있어 수사인력 낭비 및 사건 처리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음.

-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법 왜곡죄 입법, 검찰 폐지 및 기소청 설립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바뀐 수사 시스템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임.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김건희 여사에게 불려 나가 조사하는 등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해 잘 살펴 봐주시길 바람.
-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디올백 사건의 불기소 처분, 보궐선거 직후 국정감사 시작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이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이창수 검사장을 문책할 필요가 있음.
- 디올 명품백 사건도 중요 사건이므로 사전보고가 필요한데, 법무부장관에 대하여는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검찰총장이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여 조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보안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징계청구권자로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약 범죄가 급증하며 유통 경로와 수법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과거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 축소로 수사 실적이 감소했으나, 대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 이후 마약사범 인지율, 마약사범 직구속 실적 등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마약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검찰 특활비가 지난 7년 간 179억에서 72억으로 107억 감소하였는바, 증액을 통해 마약 위장 수사 등 취지에 맞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
- 현행 형법은 범죄자 처벌이 있어야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자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대검찰청에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

-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무단 폐기, 오남용, 현금저수지 조성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등의 문제가 있으며, 검찰총장 역시 과거 특활비 운영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
- 지난 1년간 검찰의 통신 조회 건수는 84만 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과의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확보하여 디넷(D-NET)에 보관 중인 휴대폰, PC 자료 중 보관기간이 10년 이상된 자료는 500건 이상으로, 지속적인 보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음. 검찰청 폐지를 통해 수사과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통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불능 등 부정합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검찰청 폐지가 아닌 기존의 검찰청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수사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통해 사건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찰, 수사, 문책이 필요함.
- 2019년 24조였던 온라인 불법도박의 규모가 2022년 37조 규모로 1.5배 증가하였음. 불법도박의 총규모도 102조 중 온라인 불법도박이 24조로 36%를 차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도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법왜곡죄를 입법할 경우 범죄 해당 여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함.

- 양문석 의원의 딸 명의 허위 사업자 대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자대출로 우회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의 범죄가 유행하였는바,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및 해당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 검찰 특수활동비는 연말에 몰아 쓰고, 현금으로 뽑아 보관하는 등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범죄에서 공범 등 초기 수사 상황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의 처벌이 경미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바, 사형제 존치 및 사형 집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고 중대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여론 수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과 법무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일부 복구된 후 마약 단속 실적이 증가했으나, 국제적 마약 범죄 확산을 고려할 때 미국 마약 수사국과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청’ 설립이 필요함.
- 울산지방검찰청장의 특수활동비 유용 및 술자리 폭행 의혹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철저히 감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이를 법사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보복 범죄가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5년간 78% 증가한 반면, 불구속 기소율 또한 낮아졌음. 가장 많은 유형인 보복 협박에 대하여 검찰이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엄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는 평가액에 따라 신고하고,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거래가에 의하도록 하는데,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느바, 대검 차원의 감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 산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감찰이 항소를 지휘하고 승소하지 못하여 국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한바,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이 없는 항소는 포기하고 피해구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감찰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연락도 받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재심사건의 경우 재심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항소의 남발을 제한하는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전주지방검찰청의 소속검사와 수사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고, 일방적으로 만나겠다며 찾아오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수사를 하였느바, 이에 대한 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으므로 수심위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민주적 통제 및 구속력 확보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 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범죄정보기획관 등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정부에 비해 많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검찰 내부의 인력난을 고려할 때 외부기관 검사 파견을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과의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이 미진한 실정으로, 검찰과 공수처 사이 관할권 문제 해결 및 이른바 ‘핑퐁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공수처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임.
- 경찰의 수사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인력의 이관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타 기관 역시 특활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만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일선 수사 현장에서의 우려사항이 존재함.
- 현직 검사가 기소 전 사건, 기소 결정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내부적인 경고 내지 공지가 필요함.
- 범죄피해구조금 구상실적이 매년 저조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의 해태이며,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해자 재산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국가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가해자 본인의 정보만 요청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검찰총장의 배우자 재산 관련하여 2024년 약 20억 원 상당의 현금 이 증가하였는데, 그 경위 및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었던 농지법 위반 소지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의 필지 중 3필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경영이 되지 않고 있는바,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함.
- 검찰 내부적으로 무죄 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무죄 평정 제도’의 근거인 무죄 평정규정은 대검찰청의 비공개 훈령으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중요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검사의 과오 여부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적격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건평정위원회’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바, ‘사건평정위원회’에 징계 권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검 감찰부장의 주식 보유 및 매매는 관련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노동부와 충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주 4.3 유가족은 재심 이후 2년, 남북귀환어부 사건의 경우에도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대법원과 검찰이 공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사활동 관련사항

- 대통령의 여론조사 대가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확인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이스타제트 항공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고 공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과, ‘문재인의 운명’ 출간 출판사가 문 전 대통령의 딸에게 2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수사해주기 바람.

-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전주시을 공천·당선 과정과 관련하여 문다혜 씨의 배우자가 타이 이스타젯 전 무이사에 취업하면서 취업하기도 전에 이미 태국 현지에 월셋집을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친인척감시팀장이 직접 태국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이 있을 때 행정관과 통화를 한 부분이 확인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매관매직의 핵심에 있다는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이며, 이는 제삼자뇌물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함.
-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용산 대통령실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디올백,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저 비리, 공천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2월 10일 전후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 인터뷰의 내용, 창원산단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비견할만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를 받동한 이유는 수사대상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인바, 현 검찰총장은 이해사유가 없으므로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현재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관련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행할 필요가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부인과 관련한 무속 논란,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김만배 씨와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지휘할 필요가 있음.

- 수사 대상자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부인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인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 하나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와 2020년 39차례 통화했던 이종호 핸드폰도 포렌식하지 않았음.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권오수, 민태균, 이종호는 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김건희 여사 및 최은순 씨만 23억 원의 이익을 보았음에도 검찰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생각함.
-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이 범죄를 증언하고 있으며, 주거지·휴대폰 등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전략공천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특별수사팀 구성 또는 창원지방검찰청 사건의 서울 이송 등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11개의 혐의, 7개의 죄명으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지역 화폐 대행업체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의 의혹이 수사중에 있음. 이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와 연락했다는 많은 증언과 전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점,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이 없었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브리핑한 점, 당일 거래량 30% 초과 부분에 대해 증권사 또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 협조 공문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와 관련한 진상 파악이 필요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복원하여 수사지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앙지검 진술조서 및 관련 녹취에 따를 때, 주가조작 사건임이 명백함.
- 검찰 내부 문건인 주가조작(시세조종) 수사 가이드에 따르면 주거지, 회사, PC,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음.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허위 경력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사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전반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처럼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것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면당하는 조직 존폐와 관련한 위기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없이 휘장기 달고 공군 1호기 타고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하였는데, 현금으로 수많은 옷을 크게 구입하여 특활비 유용 의혹이 남아있고, 친구를 통해 딸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관봉이 붙은 돈까지 줬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특검이 필요함.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특수부 전체를 동원하여 압수수색 37차례, 계좌추적 18차례 진행하였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사안임. 23억 원은 1심에서 한국거래소 의심거래 내역을 그대로 의견서에 낸 금액이고, 권오수 일당이 수익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이득을 특정하지 못하였음. 또한 주가조작 공범들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정필·김기현·이종호·민태균 등 주가조작 주범들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와 법리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또한 압수수색할 경우 많은 증거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임. 7초 간의 매매를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통정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인 점, 시세차익으로 23억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2023년 1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이월금이 갑자기 0원이 되고 그 이후 이월금이 있다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는데 이는 증여세 포탈 및 돈세탁 의혹이 있음. 또한 농협 계좌로 210억 차명 계좌로 보관했던 흔적들이 검찰 진술서 및 국세청 확인 자료로 드러남. 이러한 불법 비자금 은닉과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의 실체 규명 및 국고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서 등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국세청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투기 세력의 5대 요구 사항(민간개발 허용, 분리개발, 환지 방식 토지 보상, 특정 구역 지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모두 거절하고 공공개발 원칙을 지킨 가운데,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내부의 부패와 유동규 본부장의 단독 비리로 불거진 사건임. 개발업자들이 1,800억 원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추진하고 LH도 로비를 해서 포기했던 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관계는 무속적 공감대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하에서 명태균이 공천 개입, 꿈 해몽, 사업계획서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의 한국미래연구소 등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음.

-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비용 청구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으로 대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바, 최근 여론조사꽃에서 진행한 금정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25.2% 격차가 발생하고, 지난 총선 부산 지역구에서도 실제와 18%, 20%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음. 이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가 필요함.
- 청와대와 경호원들의 문다혜 씨 태국 이주 및 환치기 개입 의혹, 미술품 자선경매 기부금 관련 사기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관저 공사가 건설산업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진행된 정황 및 감사원이 이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검토가 필요함.
-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정민용의 진술이 검찰 조서에서 빠진 것은 검찰의 객관 의무 위반이며, 유동규의 진술에 맞춰 관련자의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됨. 관련 조사 및 조서 작성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명태균 씨 게이트 관련, 경남 선관위의 수사 요청이 있자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의 수사과에 배당하고 공소시효가 끝날 무렵 형사 4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 과정을 지연시키고, 핵심적인 휴대폰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형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바, 특검 도입이 필요함.
-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했고, 전주 의혹을 받는 계좌주 이 모 씨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하였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음.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고등검찰청에 항고 사건이 올라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덮어주기식 부실 수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강혜경 씨의 PC 및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절차에 따른 가환부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하여, 검찰에 협조한 김성태 회장이 기소된 죄명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된 것인지 등의 경위 파악을 위해 공소유지 과정을 살펴 봐주시길 바람.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살상케 하여 북한과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이는 형법상 외환유치의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에서 130곳의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성남FC 사건 수사에서는 수백 개의 지역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수수색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청구하는데에 그치므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함.
-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를 알고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주가조작 공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방조범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함.
- 검찰은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회의에서 김성태가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했으나, 당시 행사를 총괄한 김국훈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분명히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서 누락한 점에 대하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화영 증인이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111차례 검찰에 출석했고, 김성태는 같은 기간 139차례 소환되었음. 기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인권 탄압이며 부당한 수사 행태임. 또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회유한 정황이 있으며, 특히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주요 피의자들이 검사실로 소환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이화영 증인의 말대로 당시 ‘연어·술 파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
- 김국훈 증인에 따르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다면 영수증이 존재해야 하나 검찰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안부수가 경기도 보조금 일부를 횡령하여 2019년 5~6월경 나노스 주식을 매입했으며, 당시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가조작 가능성이 의심됨.
- 검찰은 김성태의 진술을 바탕으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나, 리호남은 UN 대북 제재 대상자로서 필리핀 입국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행사 항공비·숙박비 지급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검찰이 주장하는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하여, 쌍방울이 2019년 4월까지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그 이후에도 스마트팜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했고 2020년 8월에는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검찰이 주장하는 대납 금액은 무관함.
-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이 공수처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의 연임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는 등으로 지연된 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방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방치하고 예산을 17% 삭감한 것은 실질적인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는 것임.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불기소 결정은 최재영 목사가 국정자문위원 자리를 요청한 후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했음에도 이를 ‘개인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하는 등 무리한 법 해석을 적용한 결과임. 이를 불기소한 검사를 징계할 필요가 있음.
-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계, 돌잔치 참석 등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고검의 직접 경정수사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지휘를 해주길 바람.
-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공사 입찰 건 관련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조사하였고, 업체별 투찰금액 정보 무단유출 등 입찰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음. 이후 국무조정실은 수자원공사 임직원 8명을 입찰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이첩하였는데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이미 입찰비리 의혹이 확인되어 검찰에 이첩한 만큼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를 목적으로 입법된 검찰청법 등 현행법에 위배됨.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의문임.
- 이재명대표의 범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의혹이 폭로된지 2년 6개월만에, 권익위의 검찰 이첩으로부터 9개월만에 소환을 통보하였는데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닌지 의문임.
-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및 그에 대한 거짓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허위 자서전 출판 사안과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론을 분열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로 구성된 레드팀의 사건 처리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자신한다면 서울중앙지검 형사법 전문가 2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국책은행 대출에 김건희 여사 관련 회사들이 대출 특혜를 받고,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나란히 협찬하는 것이 뇌물죄 위반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의 고충이 큰 상황인바,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과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의료인들과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사건들을 엄단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병원들에서의 대리수술 및 대리시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과급력과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이버랙카 등 수익형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몰수 추정 보전을 적극 활용한 엄단이 필요함.
-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2024. 10. 17.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명품백 사건 때와 달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해 주고, 기소독점의 폐해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불기소 처분에는 오류가 존재함.

다. 서울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 (공통) 몇몇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이루어지거나 결론이 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통)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 일일 접수량, 검사 1인당 피의자 수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검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습공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재개해서 그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수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전 정부가 없앤 금융·증권 합수부, 현 정부가 살려 범죄수익 환수율이 362%까지 늘었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 및 효과적인 품행 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부 신설 등 마약범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사활동 관련사항

- (공통) 입법부인 국회에서 증인 등을 불러서 공격·변호하는 등 사법부와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법관여가 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공통) 쌍방울 대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공통)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때, 야당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없음.
- (공통)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것은 불기소되었음에도 야당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기소된 것은 불공정한 이중잣대임.
- (서울고등검찰청) 민주시민 연합이 채널A 소속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을 강요미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건 관련하여 2022. 4. 6. 한동훈만을 불기소처분하였는데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이므로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수사증거로 활용하여야 함.
- (서울고등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한 봐주기 수사이므로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고등검찰청) 김영일 검사가 IDS홀딩스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2년간 164회 출정하고 범죄수익 200억을 빼내어 부도 기업을 인수하라는 취지의 녹취가 확인되었음에도 견책 조치되었을 뿐인바, 다시금 징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고등검찰청) LG그룹 구연경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벌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철저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고등검찰청) 영부인에 관한 청탁금지법 항고 사건을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관련,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던 시절 대검에서 만들어진 고발장에서부터 영부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는 등 영부인의 범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정황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을 사무실, 휴대전화, 주거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실수사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부인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 전 검찰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검찰 사무보고규칙 위반이고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은 권오수 등이 영부인에게 시세조종 또는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불기소처분 한 것인데, 해당 수사부터 재판까지 영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자 또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있었으므로 주가조작 공범들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은 김기현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영부인에게 연락하여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및 영부인과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을 무시한 것으로 부적절한 주장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재인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2년 동안 강제수사, 50번의 압수수색, 150명의 소환조사 등을 하였으나 영부인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인바, 종결

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근절해야 할 별건 수사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고, 영부인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돈 봉투 살포 사건 관련, 비공개수사로 신속히 처리하되, 수사 검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지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은 1990년대 후반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경력이 있는 주식 전문가임에도 주식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주가조작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임에도 23억 원에 대한 출처나 방향, 여섯 개 계좌 중 시효가 지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와 관련된 정황증거를 무시하고 영부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영부인이 태광이앤씨 주식을 2억 원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하여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본 것은 영부인이 주식을 잘 안다는 증거이고, 해당 매매도 주가조작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영부인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은 통정매매, 종가관여, 고가매수, 허수주문 등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뜻이므로, 영부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문제가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김정숙 여사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하고 검찰이 영부인과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한 것은 수개월 간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론으로 정당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영부인 수사는 부실수사로 일관하고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4년째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정치검사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임에도 영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변호사처럼 변호하는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임.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의 장모가 판 주식을 영부인이 매수한 것은 통정매매이므로, 장모의 핸드폰, 컴퓨터,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이 20년, 21년에 이종호와 연락했다는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2010년 1월 권오수, 이종필 등과 만나 시가총액 200억을 500억으로 만들자고 한 것은 주가조작의 공모가 있는 것이므로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손건희는 시세조종 사범인 김기현과 긴밀한 연계가 있고 실제로 단타로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임에도 법원은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주가조작 정범들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는 영부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적절한 처분임.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이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위 과정 원우 수첩에 본인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라고 기재하는 등, 권오수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통정매매 시 영부인의 계좌를 이용했고, 그 결과 영부인이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주가조작 가담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은 1차 주가조작 작전 당시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2차 작전이 시작되는 시기에 주식을 급하게 매매하였으며, 권오수가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영부인이 주가조작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큼.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원금보장이 의심되는 정황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분배되지 않고 영부인 모녀가 독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영부인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적절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영부인의 경력·학력 위조 의혹을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이 증권사 또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거나 증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직무유기이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시민단체 새민연은 대통령실이 만든 단체로 의심되고, 이를 통해 직접 언론인들과 언론사를 고발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정필이 권오수와 영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수익이 나면 3, 40%를 달라고 하고 권오수 회장이 수락한 후 영부인의 신한증권 계좌에서 10억 원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은 당시 영부인도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이 한 수사가 무엇인지 기록목록이라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PC, 휴대전화 또는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주거지, PC,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은 영부인의 휴대전화, PC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이므로 부실수사라고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관련, 위증 본범 김진성이 16년 전 일을 자백한 것은 백현동 관련 알선수재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있으므로 해당 수사에 대하여 내부감찰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90여 명 중 대다수가 불기소처분되었고,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바, 수사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시세조종에 영부인의 계좌 47개가 쓰였고, 주포가 4,700만 원을 손실보전을 위해 영부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증거이므로 영부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영부인과 권오수의 계좌를 지속해서 추적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계좌를 코바나 콘텐츠 사건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큐텐·티메프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주가조작 주범들과 통정매매에 계좌가 사용된 초기 투자자 간에는 의사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가조작의 공범에도 해당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부인의 대신증권 계좌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임에도 통정거래가 13회 있었다고 법원과 검찰이 인정하였고, 특히 7초 만에 이루어진 매매는 통정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실수사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채널A 사건 관련하여 민언련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을 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바로 수사하지 않고 고발 후 3년 6개월 만에 조사에 착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지휘권이 없고 관여 사실도 확인된 바가 없음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콕(KOK) 코인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90만 명, 피해액이 4조에 이르는 큰 사건이므로 서울중앙지검 및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정자동 호텔 관련, 당시 성남시 소유 땅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면서 낮은 지대를 정하였는데, 해당 업체 관계자가 야당 대표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야당 대표의 측근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보조금을 4억여 원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코나아이 사건 관련, 당시 시장의 측근이 근무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준 사안이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코나아이 사건 관련, 지역 화폐 사업을 위한 입금액의 이자 및 지역 화폐의 낙전 수입을 고려할 때, 코나아이가 농협을 제치고 선정된 것은 코나아이와 야당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바,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이화영 부지사에 대하여 211번 소환하였음에도 조서 작성이 19회에 불과한 것은 회유·협박 의혹이 있으므로 내부감찰할 필요가 있음.
- (수원지방법검찰청) 야당 대표 수사 관련, 경기도청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잉수사임.
-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딥페이크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능력과 의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서울 서부·남부지방법검찰청) 보험사 불법 DB 유통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폭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SG증권발 주가 대폭락 사건 관련, 기소한 주가조작 사범은 주가를 상승시켰을 뿐 주가 폭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K 증권의 김 모 전 회장이라고 하는바,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LG 구연경 씨가 남편 윤관 씨와 내부자 정보를 통해 주식 3만 주를 취득하여 불법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금감원이 수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에 통보하였는바, 이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인천지방법검찰청) 검찰이 강요죄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 내 7년 구형하고 법원이 3년 선고한 전직 군인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더욱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춘천지방법검찰청) 춘천지검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라.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부산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1) 검찰청 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 (공통)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공통)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퇴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심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경찰의 전관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기 바람
- (공통)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권리보호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통)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통)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차별없이 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가 현금성 격려금으로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지출요건에 맞게 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이 우회적으로 감사원의 영장주의 사각지대에서 수집한 컴퓨터와 핸드폰의 정보를 검찰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임.
- (대전고등검찰청)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고, 수사·재판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대전고등검찰청)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가혹행위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력을 적절히 배분하고 고검의 직접수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국민평형을 초과하는 검찰청 관사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및 반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하여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고등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불기소 관련 언론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특검법이 시행되어 사법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경남지역 현직 검사장이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탈세한 의혹 대응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산지방검찰청) 정영학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국정원 파견근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는바 관련 사항을 시인하고 사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주고등검찰청) 채 해병 사건 관련 검사의 부적절한 문자 및 구명 활동 사례에 비추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광주고등검찰청) 계절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로 중소기업과 농어촌도 외국 노동자가 없이는 농사와 어로작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이라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함.
- (대전지방검찰청) 월성원전 사건 관련 감사원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검찰 조사나 감사원 조사 내용이 유출되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바,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할 것임.

-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주식 계좌를 직접 운영했고 주식 이해도가 떨어지는 일반투자자여서 조작 방조범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임.
- (대전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능 범죄, 마약 범죄의 폭증과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 3개월 초과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보호자기금으로 지급한 후 구상 청구율이 굉장히 낮는데, 청주지방검찰청이 10.09%이고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상률이 0.17%로 해당 지검은 구상권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함.
- (대구지방검찰청)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혐의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임.
- (창원지방검찰청) 정치자금의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지연, 입증물품 임의 제출, 여론조사비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증거 확보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은 다른 지검보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원지방검찰청도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념해서 살피기 바람.
- (울산지방검찰청)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감찰하고 있는지, 주변 수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 바람.
- (울산지방검찰청)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울산지방검찰청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특활비로 주류를 구입하고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검찰청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당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논란이 발생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탄핵이 필요하지 않도록 검찰의 자정과 엄격한 반성을 통해 검찰 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전주지방검찰청)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 등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함.
- (제주지방검찰청)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등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수사활동 관련사항

- (부산고등검찰청) 정치적 쟁점화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입장과 해석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람.
- (대전지방검찰청)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동산원 통계 조작, 국가부채 증가 등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
- (대전지방검찰청)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최소 125차례 조작하였고 실제 부동산은 폭등하였는데,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인 통계법 위반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음. 검찰은 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것임.
- (대전지방검찰청)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 수사 보다는 쌓여가고 있는 미제 사건 등 민생 수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 대표 지검으로서 그간의 노하우를 각 지검에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활성화함으로써 부정경쟁 및 기

술유출 사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피해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청주지방검찰청) 석곡동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사망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대구지방검찰청) 해병 사망 관련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증폭해서 시행한 것이 지나친 것 같으므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필요함.
- (대구지방검찰청) 전세사기 관련 대구지방검찰청의 적발 사례와 실적 우수함.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 주기 바람.
- (대구지방검찰청)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측의 녹취록을 파악하여 이종호씨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야 할 것임.
- (부산지방검찰청) 감사원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가 지연되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람.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의 충실한 수사와 공판 수행으로 항소심까지 진행하고 처벌하였는바, 일선에 있는 검사들을 격려함.
- (울산지방검찰청) 4조원대 가상자산 사기 의혹인 콕(KOK) 코인 사건 수사 진행이 미흡하므로 전국통합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창원시장 홍남표 시장과 조명래 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바,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하거나 특별수사팀 지원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람.
-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제2국가산단 유치 사전 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임.
- (창원지방검찰청) 정치자금 관련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명태균 씨로 인한 많은 논란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함.
- (광주지방검찰청) 5·18 관련 사건에 대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규나 작가, 황상무 전 시민수석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철저하게 처리하기 바람.
- (전주지방검찰청)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렛의 임원 채용과, 전 대통령의 딸에게 출판사가 2억 50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수사해야 함.
- (전주지방검찰청)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 관련 전 사위 노 모에 대한 스토킹 수준의 수사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끝없는 꼬리 물기식 압수수색, 별건 수사,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을 중지해야 함.
- (전주지방검찰청) 전 정권에 대한 수사권 남용,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등 민생 수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전주지방검찰청)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부정 채용은 청년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람.
- (전주지방검찰청)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전 대통령 딸 관련 특활비 유용 및 책 디자인비 증여세 포탈 등 관련 의혹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전주지방검찰청) 전 대통령 딸의 음주운전과 자서전 출판사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사법 정의를 지켜주길 바람.

3) 기타

- (부산고등검찰청)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한 행위를 두고 특정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과, 특정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임.
- (대구지방검찰청)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길 당부함.
- (광주지방검찰청) 민생 수사를 통해 불법 파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민사로 진행된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인지 수사 필요가 있음.
- (광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관련 사건의 재심 신청 항고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함.
-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장의 재산신고와 관련, 불성실한 재산신고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여 문제가 있음.

2. 법제처

1) 정부입법 및 법령심사 관련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찰청법」 제4조에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업무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증죄, 무고죄 등을 규정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22. 9. 8. 개정) 당시 법제처의 법령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심사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함.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함.
-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안의 심사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사전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 파악과 제도 점검이 필요하고, 사전심사 통과 후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 이므로 점검이 필요함.
- 법제처는 법령안 등 심사의 처리 기간에 있어 개별 건 마다 차이가 크므로 심사 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기준 및 보고서 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령해석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에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법령해석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법제처 법령해석의 평균 답변기간은 2024년 기준 약 39일인데, 일부 법령해석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법령해석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법령해석의 처리율과 회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령해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 등의 철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철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제기권이 없는 수사를 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법률과 하위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경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제처의 검토 등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사례 등과 같이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법령정비 관련

- 법제처가 실시하는 법령용어 정비와 관련하여 맹인 등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법률에 있는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받은 법령에 대한 정비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해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지원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한 외국법령정보 제공 및 전체 번역 중 완역률 비중을 확대하고, 국내법령의 영문화 또한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법원 판례에 있어 주문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지 않고, 최신 판례가 적정 시기에 제공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등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고시 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규칙 중 일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검찰청 비공개 행정규칙이 과다한 상황이므로 투명한 국가기관 운영을 위해 법제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법률사무종사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 경험 축적 및 법제업무 관련 실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바, 최근 5년간 계획 인원에 맞는 법률사무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 중에 있는바, 「정부조직법」개정 없이 직제로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불리는 「행정기본법」이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만 나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국민법제관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의견제출률은 오히려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국민법제관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활동 실적이 저조한 국민법제관의 경우 연임되지 않도록 재위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국장급 인사에 여성이 1인도 없는 상황인바, 편향적 법해석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감사원

1)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충실한 감사사무 관련

-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수집은 당사자의 동의만을 근거로 컴퓨터 전체에 대해 영장없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위헌·위법하므로 시정이 필요함.
- 감사원이 제출한 디지털포렌식 통계자료(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감사 14건, 방통위 정기감사 18건, 신재생에너지 실태감사 84건, 2023년 경기도 정기감사 10건 등)를 확인한 결과, 정치·표적 감사에 주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7월 8일 감사원 내부규정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이 개정된 이후, 감사원이 영장 없이 광범위한 디지털 자료 증거를 수집(2022년 97건, 2023년 462건, 2024년 9월 현재 256건)한 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검찰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는바, 이는 감사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해석됨.
- 감사원에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엄정한 감사를 통해 향후 수사 요청이나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감사원의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이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유병호 前 사무총장(現 감사위원)의 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前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에 제청한 감사원장 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되었는바, 이 법안은 국회가 감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내용으로 보이며, 정부 내의 최고 감사기구인 입법부, 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됨.
- 감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제도는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함.

- 전 정부, 현 정부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기조가 달라지지 않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함.
- 전 정부 및 공무원들에 대해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공사 사안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임.
- 전 정부 시절 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고, 월성원전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수집이 위법하였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감사원의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저공사 관련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지적
-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전 정부 시절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에 대한 상호검증 발표가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고 감사결과에서도 그렇게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와 같은 중요한 안보 관련 사안을 밝힌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해 2022년 3월 20일 이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의혹의 완전한 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 감사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인지 여부 및 당시 행정감사국 주무 과장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사직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국민감사청구 심사를 7개월 동안 600일이나 계속 연장했는데 감사원장 또는 前 사무총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의심됨.

- 관저공사 관련 감사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 증축과 관련된 감사 실시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하였다고 감사원장이 답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증축된 시설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이 관저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업체가 무면허 또는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검찰·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와 관저 이전비용, 그리고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인물이 누구인가로 문제임에도, 감사원은 관저 이전의 일부 관리·감독의 업무만 부당 처리한 것으로 보아 주의·통보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핵심 사항을 누락한 정치적 감사라고 판단됨.
- 관저 이전 및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계약 목적·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을 모두 반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김오진 대통령실 전 관리비서관을 수사하고 고발할 필요가 있음.
- 관저 추가공사에 대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없는바 자의적인 감사로 보이며, 관저 준공검사 없이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됨.
- 관저공사 관련 감사에서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이고, 계약 체결 전 공사를 착수했으며, 26개 중 19개 업체가 무자격자라고 확인되었고,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감사원이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관저 이전과 관련된 방탄창호 설치공사 금액이 15억 7,000만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경호처 직원은 해당 액수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 요구되었고, 구속 기소되었는바, 적절한 감사로 보임.
- 관저공사와 관련된 감사원의 국민청구감사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감사 범위와 대상을 결정했고, 5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대상으로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백 쪽이 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경호실 간부의 비위 혐의를 밝혀내서 파면 조치와 기관주의 요구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 용산 관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가 여섯 차례나 기한 연장을 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도 계속 지연된 사유가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음.
-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수립 행위 자체는 정책 결정 사항임에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정책 집행 사안이라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실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임과 동시에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감사원장이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단호하게 사실관계와 기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이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5년간의 재판 결과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억울하게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과 또는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감사원장은 유병호 감사위원 및 최달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 타이거파라는 일부 공무원 집단이 인사상 이익 등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준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 협조가 안 된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자인하였는바, 이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감사자료제출 거부 등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LH 사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건, 수사 요청 22건, 수사 참고자료 송부 7건 해서 29건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수사 요청 46건, 수사 참고자료 송부 15건 등 61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9월 현재 53건에 이르고 있음.
- 감사원법 제27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은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이 36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11년치 노조활동 현황, 전·현직자의 노조활동 이력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출받는 등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노조 사찰 활동의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회의에서는 유병호 증인은 제척되었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 소득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은 무혐의로 결정이 돼서 언론에 나왔지만, 비정규직 고용 통계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 작성 문제는 이미 재판 중에 있으며,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으로는 11명의 피의자 속에 같이 포함된 것임.

- 잼버리 파행 사태 감사가 12월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조속한 결과 발표가 필요함.
- 감사원은 2024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실태’, ‘국가채무 관리체계’ 감사를 계획하였으나 2년째 실질적인 감사는 시작하지 않았는바, 해당 감사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2024년 내에 감사 실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문재인 대통령 딸(문다혜)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기각한 바 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이 감사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바, 이는 감사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됨.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2년부터 실시된 군산육상태양광 공익감사 내용 중 도로보조 기충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발표를 요청함.
- 관저 이전 및 공사 관련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관저부지를 변경한 사항이 감사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당이 제기한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한 후 관련 사항을 검찰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는 야당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2023년 7월 13일 대검찰청 정기감사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미통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의조치로만 마무리 한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함.

- 면밀하지 못한 감사가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추계 등을 보고 바람.
- 2021년 감사원 3급 간부 15억원 대 뇌물 수수 적발, 2017년 에너지 공기업 수의계약 관련 감사 서류 조작 사례도 적발 등 감사원의 중대한 내부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내부감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후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바, 본선거에도 그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할 필요성이 있음.
- 홍남기 전 기재부장관 재임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절반 가까이 하향되어, 장기 재정 전망이 왜곡되며 그에 따라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이 펼쳐졌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자료제출요구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조기 종결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등은 구조적 비리로 보이므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하여 헌법 파괴, 입법권 남용이라는 발언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직무감찰할 필요가 있음.
- 검찰청의 특활비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임에도 한 번도 회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현장검증 관련(여비 등 경비 집행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 국회 증감법에는 자료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감사원은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우선 이를 제출하고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록이 비공개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을 고발해야 함.
-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열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록은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회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감사원이 앞으로 감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법사위 위원들이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으나, 그 내용에는 행정 처리한 결과, 행정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뿐 은폐 혹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 법사위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한 특수활동비 내역 관련 자료에는 특활비 사용 지침 정도의 내용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음.
- 참여연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김영신 감사위원 등을 비롯해서 감사위원의 결정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했고,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회의록은 결국 수사 자료로써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 시점에서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하는 것은 위 고발사건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거 국회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며, 그간 관행과 국회 권한 행사의 절제에 기초하여 회의록의 제출 대신 열람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는 국민감사청구 시점부터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 내용도 부실하여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감사절차가 합당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회의록 열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감사원의 행태는 감사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전액 삭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국정감사는 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이 굵직한 현안을 짚는 게 타당하므로, 특근매식비 또는 택시비용 등 소소한 것을 다루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임.
-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4년 전에 비해 운영 현황 내역이 많이 개선됐고 굉장히 용도에 맞춰서 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률적인 배분에 기초한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특수활동비 중 매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감사정보수집활동비는 향후 국가가 전액 삭감해야 하고, 특별정보활동비를 실사용 부서가 회계장부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도 큰 문제임.
-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에 김건희 여사가 의사결정에 개입된 것으로 추론되는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하고, 8월 29일 회의록에도 드레스룸, 사우나 외 불법 증축된 나머지 한 곳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은석 감사위원은 관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본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함.
- 감사위원들의 전원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사원의 전원회의 과정에 위법이 있기 때문임.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사위원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는바, 회의록을 확인해야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3) 기타

-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 171개 재외공관 중 10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공관이 25개, 3년 이상 감사를 안 한 곳이 127곳으로 약 74% 정도이므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충실히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감사원의 재심의사건 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현장 조사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므로, 재심의청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에 대한 보완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외국 주식 보유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백지신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법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 외국 출장 또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받은 선물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감사원은 최근 2년간 신고내역 자체가 없는 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사 의뢰한 내용들이 모두 무죄가 나온 월성1호기 감사에 참여한 감사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오산시 R&D센터 건립 관련 부지 결정 건과 코레일-성심당 간의 임대료 사건 등에 이용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는 신속한 갈등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간 지적되어 온 강압 감사, 표적 감사 등의 오명을 감사원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됨.
-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기관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통계를 보면 해당 기관에서 자체 감경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실제 해당 기관에서의 징계 수준의 괴리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으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조폐공사 관련 위법행위가 인정된 감사관에 대해 교육 이수만 요구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 전 정부를 비난하는 책을 유병호 총장 지시로 300부 배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서해공무원사망사건 관련 감사와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하게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됨.
-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아니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나,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TV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감사를 시작한 것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함.
-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반하는 인사라고 생각함.
- 감사원이 해마다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외부에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음
-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11개 내지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인사감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감사원은 제외되고 있음.
- 감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잘못된 감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감사대상에게 사과하고, 감사대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 공수처의 편성 예산 대비 저조한 성과, 편파적인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문이 있음.
- 공수처는 작년 2,400건의 접수사건 중 기소한 실적이 없고, 출범 후 접수한 6,007건의 사건 중 기소 사건이 4건에 불과한 등 실적이 지속해서 저조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고발 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이첩을 지양하고 취지에 맞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내부 감찰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를 삭제함에 따라 법원에서 재정 신청하여 공소 제기로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갖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법률에 위반되는 규정 개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2024년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공수처법과 충돌되어 모순이 발생하므로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사건사무규칙으로 원상복구하고 공수처의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결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위원회의 집행실적은 연례적 부진상황이고 수사실적도 미진한 상황인데 공수처가 실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채상병 사건 수사도 미진하므로 신속하고 제대로 수사하여 공수처의 임무를 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의 공수처 사무 관여를 금지한 공수처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의 위원회 예산 불용률이 높고 수사 관련 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하며 사건 접수와 처리 건수 대비 공소 제기 또는 공소 제기 요구가 현저히 낮은 등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의 인력의 재직기간이 짧고 결원이 지속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출국 금지 사실은 피의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의사실 공표와는 관련이 없음.
-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임명을 두 달 이상 지연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임.
-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우회적으로 외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수처장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검사가 연임 신청하였으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여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 검사 결원이 지속하여 문제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공보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경력을 쌓은 분들이 와서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법 제정 당시 3년 임기를 두고 연임하도록 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3년간 근무하고 연임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권력기관 감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검찰청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검사에 대하여는 일부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공수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발의된 특검법이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가 불기소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사건사무규칙 조항을 삭제·개정한 것은 공수처법 제26조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때에는 서류·증거물을 지체없이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것과 충돌하므로 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는 경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위증만 포함되어 있고 불출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불출석죄까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에 불과하고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어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사활동 관련사항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표현은 골프 라운딩 3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삼부토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테마주가 되어 토목 업종 전체가 올랐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검사와 대통령실 비리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공수처의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관련, 김진성에 대하여 백현동 알선수재 74억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공범 김인섭만 공소를 제기하여 유죄를 받게 했는데, 이는 위증교사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는 채해병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되고, 특검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지연하는 등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골프 3부라면 삼부라고 한글로 쓸 이유가 없고, 해병대 골프장은 3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3억 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3억 6000만 원은 당시 대선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개인 채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공천 현금으로 갈음했다면 채무면제에 해당하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해당 물건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하므로 공수처에서 압수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 관련, 사건 증거 자료를 적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명태균 씨가 여당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음.
- 박경섭 검사의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내부 감찰 징계 없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인바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관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최재영 목사가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겠다고 한 건 청탁에 해당하고,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 또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어 직무를 회피하거나 조속히 임명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출범 이래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접수된 사건은 각 15건, 35건이나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죄만 1건 기소된 것은 안일한 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군사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 대통령이 김대남과 일면식이 없다고 하고, 명태균과 6개월간 전화 통화한 것을 모른다고 한 것은 거짓이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관련 포렌식 결과물,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 있음에도 공수처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공수처는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라임 술 접대 검사 관련, 수사 검사로 갈 만한 사람들과 만나 5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한 것으로 뇌물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하므로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라임 술 접대 검사 관련, 3인의 검사는 수사 검사로 갈 만한 사람들이 뇌물공여자를 만나 500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가 수사하여 기소할 필요가 있음.
- 명태균 씨가 50차례 여론조사를 하여 49차례 윤석열 후보가 1등인 결과를 낸 것은 만들어진 결과로 의심되는바, 대통령에 대하여도 관련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작년 3월경 골프용 단체 카톡 모임을 만든 것이고, 삼부 발언이 있기 전까지 삼부토건에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해당 단톡방 참여자인 송호중 증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삼부토건과는 관련이 없음.
-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수사외압, 양평고속도로 의혹, 영부인 명품백, 각종 주가조작 등 사건에 모두 대통령 내외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5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두세 번 정도 본 사이에 불과해 서로 주가조작을 이야기할만한 관계가 아니므로 삼부토건과는 관련이 없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대통령의 이야기를 송호중 증인이 이종호 씨에게 이야기했고, 이종호 씨가 그 내용을 영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바, 영부인이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이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대통령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이종섭 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사단장 직위 해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으로 결재하였는데, 이후 대통령과 세 번 통화한 후 모든 것을 취소하는 등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있으므로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골프 단톡방 참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해당 단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이종호 씨가 과시를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무근임.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워싱턴에서의 외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실제 원인은 민노총에서의 대통령 퇴진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의 경우, 야당 전 대표 및 전 양평군수가 해당 땅을 갖고 있다는 등 폭로 의심이 있음.
-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함정 공작이고 관계기관에서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밝히고 있음.
- 대통령이 임성근 증인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 등을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압력을 가한 것은 이종호로부터의 구명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당 골프 카톡방의 대화 내용 및 통화기록, 250여 개에 가까운 녹취록이 모두 공수처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수처에서 분석하여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각 대화 내용 및 5명의 주식구매 이력 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송호중 씨, 이종호 씨 등은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워싱턴에서의 외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수처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가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는 것은 수사 유출이 의심되므로 내부조사하여 문책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사에 지속해서 보도되는 등 수사에 관한 내용 유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수사 사항 유출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군 골프장에 3부가 없다고 해도 송호중 증인과 최택용 증인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 이야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정상적으로 이첩된 서류를 함부로 회수한 것은 공용서류를 무효로 한 것으로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수사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 전 사무총장 직권남용 사건 관련,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과도한 수사 지연이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 중요도를 고려하여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임성근과 이종호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증거로 거론된 같은 날 찍힌 사진은 실제로는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인 등,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대표의 아들인 조 모 씨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부탁을 받은 적이 있고, 2023년 3월경 삼부토건 회장과 경영진을 잘 안다고 언급했음을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종호가 삼부토건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녹취록에 드러나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던 김대남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영부인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후 삼부토건의 주식이 폭등했고, 이종호 씨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라는 점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사건 관련,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 제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명태군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는바, 공수처에서 관련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5.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 심리·결정 관련 사항

- 본인 및 그 가족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곧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적시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탄핵심판 시 탄핵 피소추자들은 직무에서 배재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하나 기각 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탄핵은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국회의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 1987년 헌법으로는 국민주권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 제1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종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임.
- 검사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이정섭검사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이란 이유로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건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하는 등 탄핵사유를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 관련 과반수 재판관이 검찰청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는데 형사재판 결과와 달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왔음. 중대성 판단에 있어 그 행위의 위법성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는지 불 필요가 있음.
- 형사사건 같은 경우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 각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 모든 법적 권한은 그것이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권도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행사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이전의 비슷한 4번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각하결정이 났는데, 해당 권한쟁의심판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권한쟁의심판은 총 26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지자체와 관련되어 있고 평균 처리기간이 2년을 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지연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혼외자 출생에서어머니만 출생신고 가능한 건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도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므로 헌법재판소도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이러한 판결 취지를 준수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유류분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자녀가 단순히 도덕적인 면에서 제대로 공양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향후 유류분 상실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져 법원의 재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류분 반환 시 가액반환을 할 경우 비상장주식, 감정가액 낮은 재산 등 재산의 가액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2030년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그 실행 방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않고 해당 법률 규정이 2031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만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 헌법소원이 제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전검열제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조항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게임산업이 국가 산업, 미래 산업인 점을 고려하여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게임업계 및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제주도와 완도 사이의 추자도에 대한 분쟁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도 고려하여 판결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필요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2만 1,002명에 구인장이 발부되었고 영장 기각률이 18.9%이므로 3,969명이 억울하게 구속된바, 해당 조항은 헌법적으로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임.

-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 현 정부의 대응은 과소 보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태도로 보여짐.
-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일이 늘어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에서 예전에 위헌결정을 내렸던 야간시위금지 집시법 개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차별 제도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의 처분, 지방자치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행태 등 위헌적인 행정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면 위헌적인 행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법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시행령은 통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공포 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가 필요해 보임.
- 검찰청법에서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관련하여 시행령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 범위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임.

2) 헌법재판소 운영 및 기타

-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만료되고 후임 인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8월부터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서두르는 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여야를 적극 설득하여 원만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임.
- 역대 헌법재판관들을 살펴보면 서울대, 판사, 50대 등 특정 이력을 가진 인물 위주로만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의 신속한 사건처리 관련하여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 추첨 이외에 과거에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을 맡았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처리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건 하나하나가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연구 이행도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기미제부를 상설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의 평균처리기간에 헌법소원심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청구권의 남용에 가까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경우 지역 소멸, 인구 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지방이 소외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 헌법 정신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전주로 헌법재판소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AI, 사물인터넷 등 헌법적 쟁점의 선제적인 중장기 연구 및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임기 2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의 경우 97%가 변호사 자격자인데 사회적 소수의 이익, 다양한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연구원 임용 시에 근무 영역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는데 연구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영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의 평균처리기간이 거의 2년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의 장기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위해 헌법연구관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을 증원해도 그만큼 충원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증원된 만큼이라도 제대로 충원을 해서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법 원

가. 대법원(법원행정처) · 시법연수원 · 시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윤리감사관

1) 주요 현안

- 검찰은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위증죄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모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임. 법원은 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법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전자적으로 자동 배당된 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써 부적절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국정원의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증언을 신뢰한 것은 증거채택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음.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길게 묻고 짧게 확인만 구하는 방식의 유도신문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 쌍방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합의서 자료는 이른바 ‘처분 문서’인데, 이 자료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
-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유죄로 판결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를 받아 주는 것이 정당함.

- 법원이 기피신청 인용률이 민사에서는 0.05%, 형사에서는 0.36%밖에 되지 않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기피신청 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검사가 쌍방울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것은 부적절함.
-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옥상 파티를 열어 검사 출신 고위 변호사 등 주요 사건관계인과 만났는데, 이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함.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은 동시심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및 다수의 재판참여 일정으로 정치 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에서 부당함.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위증이고, 없는 기억을 되살려 기억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위증교사로 판단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위증죄 재판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및 위증을 ‘교사한 점’이 주요한 가중 사유인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두 가지 가중 사유에 모두 해당함.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 따라서 검찰의 구형을 과중하다고 할 수 없음.
- 이재명 대표는 위증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면 되고, 보지 못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임. 이것을 위증을 교사한 범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전체 30분 분량 중 7분만 짜깁기해서 만든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됨.
-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유는 녹취 전부를 법정에서 틀고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는데 주요 증인과 접촉한 것이 밝혀지면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음.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주요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함.
-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검찰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반면,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이중 잣대임.
- 제20대·제21대 총선의 여러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검찰이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한 것과 비교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중한 판결이 선고되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흔들림 없이 사법 정의를 지켜주기를 바람.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에 26개월이 걸렸음.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치적 사건의 재판은 유독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음.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성남FC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법원이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하였기 때문임.
-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담당 변호사가 교체된 경우 정상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길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기본권 보장·공정한 재판 등 법의 기본원칙 준수를 논거로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음.
- 제20대 국회 때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사건이 아직도 1심 재판에 머무르고 있음. 해당 사건을 신속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선거범죄 사건 관련 보고를 요청하고 이에 관한 온라인 간담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는 재판 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한 것은 수사를 방해한 위법 행위임.
-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공사에 취직시켜 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
-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국회가 해당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검법을 의결하였는데 대통령이 해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실상 범인을 도피시킨 위법 행위임.
-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였음에도 한 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임.
-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 주가조작의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음.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하여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행위에 대해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인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BC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
- 음성 감정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원고인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음. 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보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적절함.
- 위원이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 구성에 관여하였으므로 KBS 이사회가 한 사장 후보자 추천 등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는 국회가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임.
- 탄핵 발의 요청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발의에 대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 발의 요청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

2) 사법제도 개선 관련 사항

-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면,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이고, 일부기각한 경우가 8%이며, 완전히 기각한 경우는 1%에 불과함. 제도개선 이전에 법원 스스로 영장심사를 강화하여 엄격하게 발부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증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나, 수사 환경이 변화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강제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위증교사죄 명목으로 재판 당사자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사무실, 가정집, 차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면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휴대전화 압수 규정이 사문화되어 검찰이 일단 휴대전화를 들고 가버린 후 몇 달 뒤에 돌려주는 사례가 많음. 법원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수사 도중에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이는 자백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함. 법원은 피의사실이 공표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으면 필수적으로 이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남용하여 은연중에 공범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장에 대해 법원은 공소 기각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의 업무는 과중해지고 피고인은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필요 없는 증거는 과감히 생략하는 등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검사가 짧은 기간의 직무명령을 받고 그 전의 근무지에서 담당하던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음. 법원은 검찰의 불법적 공판 관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검사는 통상 2~3년 후 인사이동이 되는데, 재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하던 검사가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검찰 내의 규정인 직무명령을 통해서 재판을 수행하려 할 수밖에 없음.
- 판사들이 법정 언행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듯이 검사가 모욕적인 법정 언행이나 유도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백현동 사건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아직 증거기록을 변호인에게 내어주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법원이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공판중심주의 및 사법부 신뢰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선변호인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갈수록 대법원의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예산 사정 때문에 국선 변호 수당이 오르지 않고 그 지급도 지체되고 있음.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제주 4·3 유가족은 재심 이후 2년이 넘도록, 남북 귀환 어부는 무죄 선고 이후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법원은 형사보상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재심에서의 형사보상금 또는 이혼·산업재해의 위자료가 형식적인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천편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위자료 산정 기준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위자료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유족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 안보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비공개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잠정적 전자발찌 청구 및 인용 건수를 보면 경찰이 검사에게 206건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176건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인용한 건수는 74건에 불과함.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인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원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을 70% 정도 인용하고 있는데, 사회 안전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원별로 ‘찾아가는 소년재판’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을 개정하여 통과시키는 와중에 관련 사건을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한해 1,758건을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만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엇갈린 판단을 하면 재판 절차 혼란 및 소송의 장기화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됨.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기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544명의 마약사범 중 치료명령이 부과된 건수는 20건에 그치는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31%에 육박하여 치료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치료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양형기준·개별사건 양형 관련 사항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된 것이 총 접수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함.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만 아니라 법원도 영장 및 양형 관련하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법관과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39%가 집행유예, 16%가 벌금형을 선고받음. 또한, 부적절한 사유로 감형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감형받는 사례도 다수 있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임.
- 성범죄의 집행유예 건수가 매년 35%~38% 정도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바, 무고죄도 인격을 해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벌이 필요할 것임.
- 최근 잔혹한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범죄자가 확실하게 특정되고 교정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인자로 넣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구지법의 강간살인미수 사건 중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1억 원 공탁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23년형이나 감형된 사례가 있음. 어느 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크게 차이는 나는 현상을 막도록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형 선고 현황을 보면 실형 선고율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3배나 높음. 국익에 밀접히 관련된 문제인 만큼

양형기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군사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대체로 높지 않음. 군사기밀 유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형위원회는 한두 달마다 열리고, 안건도 선입·선출하는 방식으로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딥페이크 범죄 및 기술침해 범죄와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게 양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표를 만들 때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게 관대하게 판결해 왔던 사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음.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사례가 쌓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엄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기업 경영활동에서 부패방지 등 청렴 윤리경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했는데, K-CP가 법원 양형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22건 가운데 86%가 집행유예이고 실형은 3건밖에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정한 판결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선고되는 사례가 잦고, 기업인과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원은 국민의 상식을 반영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소년범이 단지 10대라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성인보다 감형 사유를 더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대로 된 교화 없이 감형만 이루어지면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임.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은 사전 안전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사후대처도 부실하게 하였

음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지자체장의 책임이 엄격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청주 간첩단 사건 항소심에서 2년 형이 선고되었는데 간첩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간첩 사건을 엄정히 판결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설문 조사에서 ‘사형제를 존치하여야 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높게 나타남. 법원은 형벌 수위에 대한 국민 여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법관인사·사법행정 관련 사항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사무분담위원회의 사건 배당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유능한 판사가 로펌으로 유출되는 등 폐단이 발생함.
- 대법원은 지난 3월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5년 만에 부활시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법원의 관료화나 독립성 훼손 문제는 판사의 보상 심리 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재도입하면 안 됨.
- 사법행정위원회, 사무분담위원회 등 법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꾼 결과 예전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가고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수도권에 판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거의 없는 반면, 법원은 서울·수도권에 61곳의 판사를 운영하고 있음. 국민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판사 내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판사가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부터 시·군·구까지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법관이 들어가 있고, 법관 정원의 약 9%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재판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기초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선관위원장의 고발 사건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공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2022년 및 2023년 경력 법관 선발 현황에서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지원자에 비해 5년 이상 7년 미만의 지원자 임용률이 훨씬 높은 점은 모순적임. 법원은 연륜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관이 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판연구원의 재직기간 3년을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에 모두 산입하는 것은 법관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설정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법관 법조경력이 완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연구원 재직기간에 대한 법조경력을 2년 정도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신규법관 임용자들의 대형로펌 출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신규법관 임용 과정에서 법관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 중 73.2%가 10대 대형 로펌에 취직하는 한편 신규 임용 법관 예정자의 14.1%가 김앤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대법원은 이러한 전관예우·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거짓검사 조서, 대금 지급 징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요구와 달리 징계를 하지 않았고, 또 부산지방법원 거짓검사 조서, 대금 지급 징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이 최근 재판정의 당사자석과 방청석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공개재판주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제20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우리나라의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부산

에의 해사법원 설치에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사사건에는 해사민사, 해사행정, 보전소송, 책임제한 및 이들에 대한 항소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관련 통계를 충실히 연구·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중에서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음. 전북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단계가 소년범 감호시설의 인원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면 청소년에 대한 교화 및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소년범 감호시설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죄는 교화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하므로, 소년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노동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까지 5심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사건의 처리가 노동위원회제도의 목적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향후 노동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심판 참여 여부가 심판장의 재량에 달린 점 및 2심·3심 법원에 배치된 전문심리위원 수가 특허심판원보다 적어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로부터 소장 자료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통상 법원이 소장한 자료에는 개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정원은 사이버 정보보안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킹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에서 형사재판부 판사와 직원들에게 트라우마 심리치료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실상 휴양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는 10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법원에서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련한 휴게 공간을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열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대상자 1명당 평균 5~6분을 사용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상자가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방증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개경쟁방식을 통한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시 그 심사결과만 공개하고 심사평가의 세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데,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평가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법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센터는 참신한 제도로서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같은 법원 내에서 동료 법관과의 소통이나 선임 법관으로부터의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지역법관제도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장단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 판결 건수가 37.4%이고, 특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0.11%밖에 되지 않음. 국민의 판결문 공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 폭넓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AI를 활용한 사법 업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하급심 판결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의 사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재판지연 해소 및 사법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법부 관련 사항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이 추진하겠다고던 사법개혁도 지지부진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2017년 사법 농단 사건 관련하여 많은 법관이 수사·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 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어 법관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음. 법관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양승태 대법원장이 3심 한신공영 사건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몇 판사들이 주식을 가진 채로 해당 주식회사의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나타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 최근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며, 입법부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우회하여 사법부가 법을 형성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음.
- 2023년 대법원 접수 행정사건 중에 난민인정소송이 40%가 넘고 있고 특히 난민인정소송을 하면 국내 체류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 과정에서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대법원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낙태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태아의 생명권 침해 문제,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모든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 입법을 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대법원도 낙태죄 개선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대법원은 최근 황색등이 켜지는 즉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교통 체증이 심해질 우려가 있음.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 및 사회 실상에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방송한 극동방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하고,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은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 티몬·위메프 사건의 해결에는 짧아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변제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대법원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고령층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용회복지원 및 파산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근거가 있으나 개인회생은 사해행위 방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채권자의 이익제기 등이 어려워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전임 대통령의 자녀인 문다혜 씨가 바뀐 주소지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은 것은 등기 해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서울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1) 공통사항

-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생명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그 정도나 경중에 상관없이 위법한 공소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도 제시될 정도이나,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장이 남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문제의식과 조치수준이 지나치게 낮음.
- 검찰이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거나 공판 첫날 100쪽짜리 PPT를 만들어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정신에 어긋남. 법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이 점점 정치의 영역에 법원의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함.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판결할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경계와 고민이 필요함.
- 재판 지연의 원인을 법관 부족, 사건의 복잡·다양화로만 돌리거나 법관 개인의 선의의 노력에 기대어 개선방안을 찾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청주 간첩단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신청만 5번, 기피신청마다 항고, 재항고를 거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함. 고의적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음.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의 결과가 사건처리 지연임. 법관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함.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약 9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음.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압수수색과 관련한 통계를 청구기관별, 압수수색 대상별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압수수색의 문제가 심각함. 현대인에게 분신과 같은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침. 원칙은 현장에서 이미지만 뜨고,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가져감. 반환기간도 지키고 있지 않으며, 반환 후에도 확보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D-NET에 보관해 활용하고 있음.
- 검찰의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 문제가 심각함. 법원이 검찰이 언론에 고의적으로 흘린 사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남 FC 사건 공판업무를 서로 다른 지검 소속 검사들이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하루씩 돌아가며 수행하고 있음. 법원이 검사 직무대리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음.
- 2021년 이후부터 법정구속률이 낮아지고 있음.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에 대한 법정구속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음.
- 2021년 1월 개정·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법정구속을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비해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짐. 법정구속 요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함.
- 1심 기준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해 재판 진행 중 불가피하게 석방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나타남. 구속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극악한 살인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함. 법원도 필요하다면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과 구상권에 따른 가해자의 구조금 변제 사실이 가해자 양형의 감경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변경 및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중요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등에서도 같이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500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은 192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자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됨. 다중인명 피해사건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고 있어 처벌수위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결정됨. 다중인명 피해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법원에서 반려견의 소유권은 강아지를 키운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을 함. 해외에서는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판사가 반려동물의 양육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누구에게 양육권을 맡길 것인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인 판결과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대채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부분의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철회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철회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대부분의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기준 126만 건의 판결 중 열람 가능 건수는 47만 4,000건으로 37.4%, 홈페이지 주요 판결 게시 건수는 1,454건으로 0.11%에 불과함.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법원의 공보업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검찰이 증거 목록 제출 자체를 지연하거나, 과도한 분량의 증거기록을 제출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7호 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1곳 대전소년원 부속의원뿐이므로, 7호 처분 전담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강력범죄,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70% 이상의 가해자가 촉법소년으로 알려짐.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적절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가사조사관이 부족(가사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담당)하므로, 양형조사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같은 수도권 법원의 경우 관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수도권 법원에도 관사 또는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개별 법원 관련 사항

- (서울고등법원) 검사의 무리한 기소나 영장 청구, 법정을 기만하는 허술한 증거 등으로 인해 법원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서울고등법원) KBS 야권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검찰이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기소권 남용임.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1심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징계처분을 취소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징계위원을 신규위촉한 행위를 심의 관여로 보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 2022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등의 2심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전됨. 개정 전 5년간 고등군사법원의 1심 파기율은 연평균 47.2%인데, 개정 후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의 1심 파기율은 연평균 41.4%에 불과하고,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비율도 고등군사법원은 7.3%인데, 서울고등법원은 2%에 불과하여 군 조직 내부의 은폐와 온정적 판결을 지양하자는 군사고등법원 폐지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임.
- (서울고등법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항소함.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원고등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임.
- (수원고등법원)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은 김성태 등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세팅하거나 명백한 물증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를 하였음. 법원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원고등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검찰이 검찰수사에 협조한 김성태 등의 검사실 소환과 관련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함.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할 필요가 있음.
- (수원고등법원)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홈페이지에 판결문 공개한 것이 0건임.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 평가·비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해당 제도는 민사재판에만 도입되어 있고, 형사재판이나 가사재판은 전국 대비 처리속도가 낮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음.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하여 판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들은 과도한 압수수색, 진술 회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 되는 공소장 제출, 과도한 수사 기록 제출 및 증인 신청, 쪼개기 기소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아주 과도한 사례들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하여 검찰이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하거나, 증인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남 FC 사건에서 증인이 400명 넘게 신청된 것은 성남 FC 후원금 관련 공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이 증거 부동의를 하여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은 조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공문 표지와 속지를 갈아 끼우는 등의 무리한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거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11월에 선고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할 필요가 있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공개한 전례가 있음.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정적 수사의 결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다르므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과도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지역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검찰의 수사권 비대화의 영향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법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해경, 통일부 등의 사건 은폐·왜곡 사실이 드러남.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과 북한을 상대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명 롤스로이스남에 대해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됨. 국민들은 법원의 이와 같은 고무줄 양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단장과 감독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어긋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안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1위이므로,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장의 마포구 상암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2km 이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위반한 해당 입지결정고시 처분은 무효화해야 함.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선량한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됨.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을 처리할 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을 신청하면 「난민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주어져, 체류 목적으로 난민소송이 이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전담재판부 신설 등 난민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울행정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과거 다른 판결과의 일관성이 문제 되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이는 문리적으로 충실한 해석은 아니며, 헌법재판소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명의 재적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의결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음.
- (서울회생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기간 내 채권 미신고 등으로 누락되는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절차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심리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① 파산보다는 인가전 M&A 추진, ② 영세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안내 및 창구 업무 대응, ③ 온라인을 통한 자료 열람·복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회생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법인과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건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음. 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나, 피해자는 사직하였고, 조사과정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의 1심이 5년째 진행 중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재명 대표가 10월 6일 페이스북에 ‘단순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라는 글을 올림.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음.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에게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하여 양형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인천지방법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성관계 촬영 등을 강요한 전직 군인에 대해 경찰은 강요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강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함. 피해자의 유족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에서 사정을 잘 살펴주길 바람.
- (인천지방법원) 인천 11세 아동학대 살인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가 아닌 아동의 친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가혹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남. 법정언행컨설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춘천지방법원) 강원 영월에서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이 선고됨. 20대 후반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또한, 해당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유족구조금 지급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참작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음.
- (수원지방법원)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예단 우려 등으로 부적절함.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배당이 필요함.

- (수원지방법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의 재배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재판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보임. 공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스포싱 등 조직범죄에 적용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을 여러 재판부가 중복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됨.
- (수원지방법원) 이재명 대표는 병합심리, 재판부 재배당 신청 등으로 재판지연을 꾀하고,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 추진, 법관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법원이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음.
- (수원지방법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으나, 보석기간 중 사건관계인들과 옥상파티를 한 사실이 보도되었으므로, 보석취소 등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수원지방법원) 유튜버 쓰앙을 공갈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 카라콜라 등에게 ‘반성문 감형’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는 회생법원이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함.

다. 대전고등법원 · 특허법원 ·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1) 공통 사항

- 잔악무도한 살인사건들에 대해 최종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는데,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공통,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판사 107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판사가 13명으로 12.1%에 달하는 등 비가동 법관이 많은 것이 재판지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재판지연 최소화를 위해 비가동 법관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2023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8%로 압수수색 자판기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나오고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월성원전 감사 사건은 감사원의 불법적인 표적감사와 이것을 악용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으로, 2심에서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의 1심이 3년 4개월째 안 끝나고 있는데, 빨리 심리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간첩단 사건의 의도적 소송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재판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나,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재판장으로서도 간섭할 권리가 없음.

- 지연되는 수사, 계속되는 수사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 재판 지연은 공소장 100~200페이지, 수사기록 10만~20만 페이지를 내는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2017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아 당사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에서 촉구해야 함.
- 판사들의 지방 근무가 예전보다 배로 늘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해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별 법원 관련 사항

- (대전고등법원) 충북동지회 청주 간첩단 사건이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에서 2년 5개월만에 결론이 났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판 지연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청주 간첩단·제주 간첩단 사건이 재판부 기피·무단 퇴정·국민참여재판 신청·의견진술 연기 등의 방법으로 너무 지연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허법원)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빠른 심리와 판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 같은 사건 또는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재판 받는 법원·재판부에 따라 받는 위자료 액수가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법원 내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모아 적정 범위를 맞출 수 있는 참고자료 등을 통한 기준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 사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굉장히 많은 영장을 발부하여 문제가 많음.

- (광주고등법원·제주지방법원) 광주고법 산하 보안사고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7배나 급증하였고, 특히 최근 5년간 제주지법 보안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음.
-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재판 진행이 더디고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는 비율도 낮는데, 국가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를 바로잡는 옳은 판결을 내려주기 바람.
- (청주지방법원) 최근 영동지원에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다섯 명에게 성별 정정 허가를 했는데, 여태까지 외과적 수술 등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해 오던 것을 이제는 참고사항으로 완화했음.
- (청주지방법원) 외과적 수술 없이 성전환을 인정하게 되면 생물학적 남성이 법적 여성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함.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의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0건이고 배제율도 70.5%에 달하므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제고를 위한 법원 배제율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음.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이 울산이나 청주보다 많으나 가정법원이 없으므로 설치를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방법원) 지급명령신청과 무변론 판결제도를 악용하여 지적장애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소송사기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현재의 사법제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많아 지적장애인과 같은 소송무능력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제주지방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 4·3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2년째 지연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음.

라.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

1) 공통사항

- (공통) 서울 남부지법에서 피해자가 흉기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사건,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상해하는 사건, 부산 서부지원의 화재 미수 사건 등 법정 내 피습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보안요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보안검색대의 성능 강화 등 법원의 자체적인 보안대책이 마련이 필요함.
- (공통)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 모든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
- (공통) 범죄의 가해자가 민사소송 서류의 전자소송 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5년 7월 이전에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함.
- (공통) 재정신청 주체를 고소인에서 일반 국민들로 변경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고등법원 법관 배치 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통) 재정신청 인용률이 2%밖에 안되므로 재정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통) 법원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음.
- (공통) 1심에서도 양형 조사와 심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공통)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판부 간의 과도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 간 간담회 실시, 전국적인 양형에 관한 연구 참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개별 법원 관련 사항

- (대구고등법원) 대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범죄 피해자인 남자친구에 대한 흉기 이용 살인 미수 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에서 50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27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구고등법원) 의붓딸 강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하면서 피고인이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이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청사 신축으로 2030년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전할 때 보안과 동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청사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시설이 낙후된 바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등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대구지방법원) 대구 북구의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가해자가 다세대주택의 채무 담보를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법원에 등기를 했음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를 누락했고 이에 대한 수정 등기도 오류가 있었는데, 부동산등기는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대구지방법원) 채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 이용민 중령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중복 등의 우려가 있어 준항고가 청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함.
- (대구지방법원) 대구 북구의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해가 15억 이상 발생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는 양형이 필요함.
- (대구지방법원)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결과에 따라 포항시민이 국가와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을 한 바 있고 향후 배상 예상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집단소송’이 된 상태인 바, 향후 항소심에서 과학연구에 있어 연구 개발 의욕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점, 피해보상액의 적정성 및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적합하다는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판결이 필요함.

- (대구가정법원) 관할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유사 규모의 법원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부산고등법원) 민사본안 사건 및 형사사건의 지연처리 등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근무성적 평정 실질화를 통한 법관들의 근무 의욕 강화를 위해 법원장 추천제도의 개선 및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산고등법원) 부산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자녀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자녀인 선원의 사망 후 법원 판결을 통해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자 선원의 누나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함.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공탁금 약 48억 원 횡령사건 관련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 확대와 공탁관과 공탁 보조직원의 권한 분리 등 보완 대책의 시행 외에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사건 관련 자 징계가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으로 허술한 측면이 있는데 징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담당 참여관과 실무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이 8.5%에 그치는 등 전국 대비 실시 실적이 낮은 수준인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철회율을 낮추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서울과 수원의 회생법원 보다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인력 보충 외에도 다른 노력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울산지방법원) 민사 단독 본안 1심의 경우 작년과 올해 다른 법원 보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울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의 소년원 송치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으므로 보호처분 결정시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7. 군사법원

-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작전에 대한 야권의 주장은 괴담과 선동에 불과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의 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며,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엄에 대한 야권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음.
-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경호처 공관에서 수방·특전·방첩 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호 작전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식사 모임이었음.
-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경호 회의 목적으로 9월 4일 경호처장 관저에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모였다고 주장하나 대통령 경호대책위에 각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 국방부 장관은 전 경호처장이자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격려차원에서 위 사령관들을 모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양 진술이 모순됨. 또한, 공문 없이 사령관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전 경호처장이자 현 국방장관이 3인의 사령관들을 불러 식사한 것이 계엄을 준비한 것처럼 야당은 주장하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계엄 기간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계엄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 또한,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계엄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규정에 위배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직제와 다른 업무지시가 필요한 경우 직제를 개정하여야 하고, 항명죄의 본질은 군사상 지시여야 하며 군사 목적상 지시가 아닌 다른 지시는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항명죄는 군사작전 중 지시가 아니라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해 어기는 경우에도 성립함.

- 항명죄 관련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의도적인 재판지연과 방해를 하고 있으며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임.
- 항명죄를 기소한 군 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해당 군 검사는 8월 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사실상 날인만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법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볼 수 없음.
- 2024년 5월에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하였고 군기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던 문제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과 같이 채상병 사건의 경우도 인지통보서를 작성한 것은 월권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사법원법 제2조에 의하면 군사법경찰은 군 내 사망 원인이 된 사건의 수사권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군사법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지체없이 이첩하여야 하는바,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진술서, 진술조서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고, 이첩 보류 지시한 것은 수사 외압이 아닌 법리를 검토하라는 적법한 명령인바 이를 거부한 것은 항명죄에 해당함.
- 관례에 따르면 항명죄는 군사상의 필요로 발해지는 작전 또는 교육 및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병력 통솔 사항 등에 관한 것에 대한 적법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성립하고 항명의 대상이 모든 적법한 명령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님. 박정훈 대령 사안은 단순한 수사에 관한 사안으로 군사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군사경찰 직무수행 법률, 군사법원법에 따라 부대의 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3회에 걸쳐서 이첩 보류지시를 했고,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이첩을 감행한 것은 항명으로 볼 수 있음.
-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르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을 즉시 이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서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수사관들과의 논의 및 군 검사들과의 법리 적용 검토 등을 거쳐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것인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박정훈 대령의 사건이첩은 항명으로 볼 수 없음.
-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할 법률상 권한이 없고 해군참모총장을 통해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에 직접 지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한 것을 항명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사경찰직무법에 국방부장관이 ‘설치 부대장을 통해서 지휘·감독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이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정훈 대령이 압수수색 전 통화기록, 문자를 다 삭제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단순히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아무런 확인 없이 청구서에 기재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
- 해병대 사령관이 2024년 2월 1일 군사법원 재판에서 ‘이종섭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 이라고 법정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 이첩했을 것이고 이첩 보류 지시는 위법한 지시임으로 이에 반하는 것은 항명이 될 수 없음.

- 이종섭 장관 지시를 따랐을 경우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명령이므로 이를 항명하였다고 하여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음.
-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항을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수차례에 걸쳐 상의하였다는 것은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이러한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은 항명죄에 해당함.
-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해병대 출신 5명이 만든 ‘멋진 해병’ 단톡방 멤버들인 이종호 대표가 김규현 변호사와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통화하였고 김규현 변호사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국에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한 것으로 제보함. 그러나 나머지 단톡방 멤버 4인은 ‘진위가 왜곡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임성근 사단장도 자신이 구명 로비를 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허위 사실임.
- 임성근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도 모르고 이종호도 모른다고 증언한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허위의 주장에 불과함.
-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었던 박세진 중령은 2024년 9월 25일 항명죄 사건의 8차 공판기일에서 “2023년 7월 31일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라는 말을 전달받았고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증언하였음,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이 필요함.
-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 채상병 사건 수사에 관한 지시를 한 바 없고, 신범철 차관은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바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 직접적인 가해자, 방조자뿐만 아닌 사단장에게도 포괄적인 부대 관리책임을 물어서 보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조치를 하였음.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부대의 지휘 책임을 물어서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함.
-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은 정보요원들의 신변 위협 및 동맹국들과의 정보 협력에 차질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10년간 8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 16건이 접수되었음. 81건 중 39건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그 중 29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군대 내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엄벌하는 등 기밀 유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안과 같이 국군의 정보망이 김대중 정부부터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였으며 2017년 정보사에 대한 외부 기관 감사 권한을 삭제하였음. 공교롭게도 그 기밀 유출 군무원이 중국에 포섭된 시기와 비슷함.
- 군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924건이 적발, 휴대폰 사용과 폐쇄적인 군 문화가 맞물리며 온라인 불법도박이 유행하게 된 것이므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 시 엄벌할 필요가 있음.
- 군 내 마약 사건도 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눈에 띄게 건수가 늘고 있고 마약범죄 추징금 상위 판결 중 7건을 보면 군에서도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홍보하고 있음,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마약범죄 68건 중 21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의 불기소 처분율보다 높으므로 군에서도 마약 사건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
- 군 내 성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5년간 1,391명의 군인이 피해를 신고했으며 이 중 퇴직한 인원은 154명, 약 11% 피해 군인이 퇴직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퇴직하는 건수는 국방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군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민간 영역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쟁에 대해서 단호하게 태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임. 북한을 향하여 풍선을 날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오물 날리며 이러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군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 사안에 대한 인력 수급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장관이 본회의에 와서 야당 의원들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임.
-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을 작성한 사실로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란음모, 내란예비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 도피로 인해 기소 중지가 되었으나 현재 기소된 혐의사실은 단순한 직권남용임. 서부지검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하여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고 외압에 의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임.
- 800-7070 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 보안 사항임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청와대 행정관·비서관들이 명함에 번호를 기재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답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북한 외무성에서 ‘남조선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단을 평양 일대에 살포하였다.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임.
- 군사법원에서 폭력 사건의 실행률은 1% 전후이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약 4%인 반면 민간법원의 실행률은 폭력 사건의 경우 21%이고 성폭력사건의 경우 약 30%가 실행이 나는데 이를 근거로 군대

에서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는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차용하는 등의 군사법원 운영시스템을 재검점하여 이런 비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군 공항 근처 거주자들의 경우 1종·2종·3종 지역으로 구별되어 월 6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보상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고통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상액이므로 보상액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법무관 충원율이 21년 100%에서 24년 45%까지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군사법원장의 경우 현역 군인으로 인사권이 국방부장관에게 있어 민간 법원과 달리 독립성 보장 측면이 약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수는 1666건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가 83%, 1391건으로 가장 많고 명예훼손, 성희롱적 발언들이 많음. 국방부에서 장병들한테 대상관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200대 정도 동원하여 군 안에 불법 촬영장비, 몰카가 있는지 탐지하고 있으나 9000건 정도 탐지 활동을 했는데 단 1건도 적발이 안 됐음. 그러나 같은 기간에 군 내 몰카 범죄로 육군에서 20건 있었고 해군에서 2건이 군 검찰단에 이첩되었음. 단속 활동의 실효성을 검토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군의 재정신청 처리현황은 접수된 508건 중 430건이 규정된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고 있음. 재정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여야 함.
- 군 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님의 승진과 가정의 부양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회유하는 사안들이 발생함 아동학대 범죄는 심각한 범죄인바 관할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법무부

가. 법무부 본부

-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한편,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약범죄 급증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마약(수사)청의 신설 및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외 입법례 및 UN 반부패 협약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검토할 것
- 사적 제재에 관한 국민여론에 유의하여 사법시스템 및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무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132콜센터'의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리걸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사망한 범죄자의 은닉·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한 규정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통계를 참고하여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것
-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법무부 소관 예규에 ‘정신병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
- 사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사법통역제도 추진체계를 갖출 것
- 재심사건 관련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간첩사건 재심 결과 무죄 판결 시 상금·보로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것
- 법무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자정보 선별 작업이 끝났음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검토할 것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
- 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혼 후에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유족구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공공장소에서의 흥기난동 등과 관련하여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 등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흥기난동 피해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범죄피해구조금 수령 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프랑스전력공사의 EU 제소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배상 판정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
- 법무부·교정시설·출입국시설 등 내에 설치된 중국산 CCTV 현황을 전면조사하여 그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온라인 도박 범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도박광고 처벌 관련 법령 정비 등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협력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신청권을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수사 관할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검토할 것
- 검찰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바,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시설 점검 정례화 및 주기적인 현장 시찰 등을 검토할 것

- 최근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용자 인권보호 및 국민안전 보장 목적의 특수행정서비스(계호·교화업무) 성격에 비하여 교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정행정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구치소·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오인하여 재소자를 잘못 석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할 것
- 수형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시설 도서관’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정시설 내 영유아 양육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변호인이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모바일이나 개인PC를 이용한 스마트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정시설 및 소년범 수용시설에 대한 가석방 활성화 외에도 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자장치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 보호관찰관을 보좌하는 무도실무관 등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특수직무수당·계호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사회로 나온 마약사범들이 치료·재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마약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장단기 치료기관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할 것
- 이민청 설립과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조직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할 것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보장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역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포함한 정책을 폭넓게 수립할 것
-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파악하여 현장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불법체류 증가로 인한 고용문제 등 국내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할 것
- 난민정책 수립과 난민범죄 대응을 위하여 통계자료 및 사례집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수사상 출국금지를 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사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난민소송과 관련한 생계비 부정수급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위와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연계를 통해 난민신청자의 환전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로 계절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비자발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신속한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권익침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등 대안적 보호시설을 확충할 것
- 외국음식 전문음식점의 E-7 비자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 중 중식당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 음식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 지방 전문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모집을 통해 지방의 산업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사업에 지방상황을 반영할 것

나. 대검찰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탄핵소추 발의 검사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는 동우회 규정 전체 개정을 재고할 것
-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 등 현행 검찰·경찰·공수처의 모호한 수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활동비가 마약 위장수사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검찰이 확보하여 디넷(D-NET)에 보관 중인 자료의 지속적인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검찰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마약수사청’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
- 보복 범죄 사건이 엄중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검찰이 국회로부터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검찰을 연결할 것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민주적 통제 및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범죄피해자구조금 홍보를 활성화하고,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사건평정위원회’에 징계 권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일 거래량 30% 초과 부분에 대해 증권사 또는 금융 당국에 송부한 수사 협조 공문을 제출할 것
- 병원에서의 대리수술·시술 등 불법의료행위 및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 사이버랙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형 가짜뉴스 유포 사범 엄단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등 실질적 처벌방안 마련할 것

다. 서울고등검찰청 · 수원고등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공통)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이루어지거나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공통)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인권 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변론이 종결된 이후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경위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재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수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 및 효과적인 품행 교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부 신설 등 마약범죄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라. 대전고등검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 부산고등검찰청 · 광주고등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공통)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
- (공통) 경찰 퇴직 공직자가 로펌 취업 심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전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 (공통)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사건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비, 인력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전고등검찰청) 범죄피해보호자기금 지급 후 구상 청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청 관사 중 국민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 관사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및 반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검사들이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할 것
- (광주고등검찰청)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외국 노동자 활용을 위해 계절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지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 (대전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미제사건 증가, 지능 범죄, 마약 범죄의 폭증과 처리 지연 이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의 영장청구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하거나 특별수사팀 지원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것

2. 법제처

-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등을 검토할 것
-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법령심사 기간 확보를 통해 법령심사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
-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충실히 보장할 것
- 법안 심사 과정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전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고, 사전심사 통과 후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다수 존재하며, 심사 처리 기간에 차이가 큰 상황이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
- 법령해석 처리기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법령해석의 처리율과 회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법령해석에 대한 철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사례 등과 같이 잘못된 법령 홍보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맹인 등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률용어 정비를 지원할 것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심판받은 법령에 대한 정비율이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해당 소관 부처에 법령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지원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

- 세계법제정보센터 외국법령정보 제공 및 전체 번역 대비 완역률 비중과 국내법령의 영문화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법원 판례 정보의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행정규칙이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만 나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장애인기업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국장급 인사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

3. 감사원

- 이태원참사, 채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것
- 윤석열 정부의 고용지표 관련 홍보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
- 관저이전 및 공사와 관련하여 김오진 대통령실 전 관리비서관을 수사하고 고발할 필요성을 검토할 것
- 관저이전 및 공사 관련 감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기관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할 것
- 감사원장은 유병호 감사위원 및 최달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조직화된 공무원 집단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자료제출 거부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1조 감사방해죄를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사람들에 대해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강제 수사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 절차의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것
-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
- 감사원은 2024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실태’, ‘국가채무 관리체계’ 감사를 계획하였으나 2년째 실질적인 감사는 시작하지 않았는바, 해당 감사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
-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에 대해 감사할 것
- 2022년부터 실시된 군산육상태양광 공익감사 내용 중 도로보조 기층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추가 발표할 것

- 면밀하지 못한 감사가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추계 등을 보고할 것
- 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후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바, 본선거에도 그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할 것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할 것
- 감사관의 자료제출요구의 범위나 내용이 일관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 감사원이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하여 헌법 파괴, 입법권 남용이라는 발언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직무감찰할 것
- 감사원은 중대한 내부 비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 감사원은 소속 공무원이 외국출장시 공직자가 받은 선물 등을 신고하도록 할 것
-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사전컨설팅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전 정부를 비난하는 책을 유병호 총장 지시로 300부 배포한 것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또는 횡령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시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하여 보고할 것
-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기업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피감기관 재취업에 대하여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매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수감기관이 감사원을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
- 감사원 또한 매년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를 수감할 것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
- 공수처는 고발 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이첩을 지양하고 취지에 맞게 수사할 것
- 공수처는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내부 감찰을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할 것
-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공보관 제도를 활용할 것
- 공수처는 권력기관 감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검찰청 검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공수처가 라임 스톱 접대 사건의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
- 공수처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담당 부서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 수사계획서를 제출할 것
- 공수처는 현재까지 밝혀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련된 사건 수사계획서를 제출할 것
- 공수처가 불기소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사건사무규칙 조항을 삭제·개정한 것은 공수처법 제26조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때에는 서류·증거물을 지체없이 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 것과 충돌하므로 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
-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 제2항을 다시 되살려 2024년 3월 개정한 사건사무규칙 이전으로 원상복구 할 것
-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고발하는 경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위증만 포함되어 있고 불출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불출석죄까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와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에 불과하고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어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공수처 검사의 연임 및 결원 발생에 관한 문제가 계속되므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5.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혼외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을 촉구할 것
- 장기미제사건의 증가와 사건 평균처리기간의 증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적시처리 대상사건 지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결정을 내도록 노력할 것
- 빠른 판결이 필요한 헌법재판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되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탄핵심판의 각하나 기각 결정 시 피소추인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탄핵심판에서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탄핵사유를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반복적으로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사건의 배당에 있어 과거에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사건을 맡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재판관에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장기미제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나 헌법연구관 증원을 검토하는 등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침해한 정치적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적 쟁점의 선제적인 중장기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장의 임기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헌법연구관의 충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
- 연구의 다양성을 위하여 영미권에 치중되어 있는 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를 개선할 것

6. 법 원

가. 대법원(법원행정처) · 시법연수원 · 시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윤리감사관

- 연례적인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피해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유족구조금을 양형 기준표상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딥페이크 범죄나 전세사기처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사안은 신속히 양형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법관과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할 것
- 부적절하거나 임의적인 감경요인을 배제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기술·군사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사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사 지급에 관한 대법원 내규를 정비할 것
-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법관 법조경력과 관련하여 재판연구원 재직기간 3년 중 2년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의 지원자보다 7년 이상 10년 미만 지원자의 법관 임용률이 더 낮은바, 연륜 있는 법관의 임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관 신규 임용 시 법관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년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년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 소년범 감호위탁시설 확충을 검토할 것
- ‘찾아가는 소년재판’에 대하여 전국 법원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하급심 등 판결문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판 공간과 방청석을 차단막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공개재판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재점검할 것
- 부산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전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판사 트라우마 치료 사업’이 휴양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법원 청소용역 공무원 휴게시설의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회의내용과 시간, 선발 사유를 공개하는 등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무분별한 난민인정소송 제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문심리위원을 늘리고 심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지방은행의 보관은행 복수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

나. 서울고등법원 · 수원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공통)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공통) 법원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압수수색과 관련한 통계를 청구기관별, 압수수색 대상별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경직적인 구속기간 제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과 구상권에 따른 가해자의 구조금 변제 사실이 가해자 양형의 감경요소로 평가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
- (공통) 다중인명 피해사건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통)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관련 문제 등 반려동물 관련 법적 쟁점에 대비할 것
- (공통)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통)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판결문 공개와 주요사건 홈페이지 게시를 확대할 것

- (공통) 재판진행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법원 공보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7호 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전담 의료기관을 확대할 것
- (공통) 양형조사관 활용 등 소년법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가사조사관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통)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수도권 법원에도 관사 또는 비상대기숙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안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1위이므로,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행정법원) 난민소송이 체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재판부 신설 등 난민소송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 처리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회생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기간 내 채권 미신고 등으로 누락되는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절차지원을 강화할 것
-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영세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안내 및 청구 업무 대응, 온라인을 통한 자료 열람·복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경기침체에 따른 회생법원 접수사건 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사건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재점검해 볼 것
- (인천지방법원) 법정언행컨설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 (수원회생법원)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는 회생법원이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다.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 (특허법원)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나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빠른 심리와 판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보안장비 확충, 법원 보안관리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법정 내 근무상황을 재점검하여 사회적 관심도나 보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보안요원을 집중배치하여 운영할 것
- (광주지방법원) 같은 사건 또는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재판 받는 법원·재판부에 따라 받는 위자료 액수가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주지방법원)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여건지원 및 적극적 태도로 실시율이 제고되도록 할 것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이 울산이나 청주보다 많으나 가정법원이 없으므로 설치를 검토할 것
- (제주지방법원) 지급명령신청과 무변론 판결제도를 악용하여 지적장애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소송사기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현재의 사법제도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많아 지적장애인과 같은 소송무능력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라.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부산화생법원·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창원지방법원

- (공통) 법정 내 피습 사건 발생에 대응하여 보안요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보안검색대의 성능 강화 등 법원의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
- (공통) 범죄의 가해자가 민사소송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발생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공통) 양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재판부 간의 과도한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 간 간담회 실시, 전국적인 양형에 관한 연구 참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청사 신축으로 인한 2030년 청사 이전시의 보안과 동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청사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시설이 낙후 되었으므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대구지방법원) 대구 북구의 집단 전세사기 사건 관련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 누락 및 오류가 있었는 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
- (대구가정법원) 관할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유사 규모의 법원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
- (부산고등법원) 부산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준비를 검토할 것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공탁금 약 48억 원 횡령사건 관련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 확대와 공탁관과 공탁 보조직원의 권한 분리 등 보완 대책의 시행 외에도 관련 공무원들을 향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사건 관련자 징계가 허술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징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담당 참여관과 실무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이 8.5%에 그치는 등 전국 대비 실시 실적이 낮은 수준이므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철회율을 낮추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서울과 수원회생법원 보다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인력 보충 외에도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울산지방법원) 민사 단독 본안 1심의 경우 작년과 올해 다른 법원보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할 것

7. 군사법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임성근 前 사단장을 現 보직에서도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것
- 항명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관련자들의 의도적 재판지연 의혹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
- 군내 마약범죄 및 불법 도박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군 법무관 기피문제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징병제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수급 방안과 같은 국방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것
- 군사법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군대 내 도박, 마약 처벌현황 및 통계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